



“자원순환을 넘어 에너지기업으로”

#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

KOREA RESOURCE-RECYCLING ENERGY MUTUAL-AID ASSOCIATION



수신 전 조합원사 대표이사  
[대표이사 메일송부 병행문서]

참조

제목 재활용 방치폐기물 안정적·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 
수정 시행 알림

1. 한공조 2019-456호[환경부, 「재활용 방치폐기물 안정적·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」 시행 알림, '19.11.21] 관련입니다.

2. 환경부에서 재활용 방치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시행한 「불법폐기물 안정적·신속 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」과 관련하여 우리조합에서는 동 지침에 불법폐기물 임시보관이 가능한 "사업장 내 여유부지"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. 이에 환경부에서는 우리조합 요청사항인 "동일인이 해당 사업장에 연접한 폐기물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접한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내 설치 가능"을 반영하여 불임과 같이 관할 환경청 및 시·도에 시달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예) 폐기물 소각시설 부지 내 연접해 운영 또는 사후관리 중인 매립 시설 상부에서도 임시보관 가능

붙임 : 불법폐기물 안정적·신속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수정 알림 1부. 끝.

## 한국자원순환에너지공제조합이사장



담당 장대규 팀장 오은석 사무국장 장기석 부이사장 김상배 이사장 박우동  
협조자  
시행 한공조 2019 - 495호 (2019. 12. 18) 접수  
우 04508 서울특별시 중구 중림로 50-1(만리동1가, SKY1004빌딩) 13층 / www.krema.kr  
전화 02-718-7900 전송 02-718-7171 / krema@krema.kr / 비공개

# 붙 임



환경부

## 환경부



수신 수신자 참조

(경유)

제목 불법폐기물 안정적·신속처리를 위한 업무처리 지침 수정 알림

1. 폐자원관리과-7396('19.11.19.)호와 관련된 문서입니다.
2. 불법폐기물의 적극적 신속 처리를 위하여 관련 호로 알려드린 업무처리지침을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  - 변경사항 : 임시보관장 설치 지역(동일인이 해당 사업장에 연접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접한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내 설치 가능)

붙임: 불법폐기물 안정적·신속처리를 위한 업무처리지침(수정)부. 끝.

### 환경부 장관

수신자 서울특별시(자원순환과장), 부산광역시(자원순환과장), 대구광역시(자원순환과장), 인천광역시(자원순환과장), 광주광역시(자원순환과장), 울산광역시(자원순환과장), 경기도지사(자원순환과장), 강원도지사(환경과장), 충청북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충청남도지사(환경보전과장), 전라북도지사(환경보전과장), 전라남도동부지역본부(물환경과장), 경상북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경상남도지사(환경정책과장), 한강유역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낙동강유역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금강유역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영산강유역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원주지방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대구지방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, 전북지방환경청장(환경관리과장)

행정사무관 **한경동** 과장 전결 2019. 12. 12.  
**권병철**

협조자

시행 폐자원관리과-7981

접수

우 61945 환경부 폐자원관리과

/ <http://me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7379

팩스번호 044-201-7376

/ [ddeng@me.go.kr](mailto:ddeng@me.go.kr)

/ 비공개(5)

---

**불법폐기물 안정적·신속 처리를 위한  
업무처리 지침**

---

2019. 11.



**환 경 부**  
**[폐자원관리과]**

## 1

### 추진배경

- '19.2월기준 전국적으로 불법폐기물(방치·불법투기 등) 약 120만 톤이 적체되어 2차 환경오염, 화재 발생 등 국민 생활 및 안전에 우려
- 당초 처리계획(2.21 대책)을 대폭 앞당겨 금년 내 전량 처리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 집중(대통령지시사항, 4.29)
- ⇒ 이에, 사회적재난 상황\*인 불법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적극적인 법령 적용을 통해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
- \* 화재발생, 침출수 발생으로 인한 국민안전우려 및 국제적인 보도 등으로 인한 국가 위신 하락 우려

## 2

### 추진경과 및 관계법령

- 「불법폐기물 관리강화 대책」 (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: '19.2.21)
  - ☞ 불법폐기물은 신속하고 안정적 처리를 통해 국민 불편 최소화
- 불법폐기물의 안정적 처분을 위해 법령상 적극행정 이행
  - ☞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1조제2항(폐기물 보관량·기간 초과 승인) 및 제32조 [별표8] 제3호(위탁받은 폐기물의 재위탁 승인)

## 3

### 기본 방향

- ① 불법폐기물은 신속히 “폐기물중간(소각) 처분업체로 반입”
- ② 폐기물소각업체는 불법폐기물 반입량 증가, 안전한 보관을 위해 사업장내 여유 부지를 활용 “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” 등 설치·운영
  - \* 지자체는 불법폐기물 보관을 위한 “폐기물 임시 보관장” 승인
- ③ 폐기물소각업체는 불법폐기물 소각처분하기 위한 분리과정\*에서 발생하는 매립대상 불연물은 매립업체로 재위탁 가능
  - ☞ 불연물 재위탁량은 허가받은 소각처분용량의 10% 이내
  - \* 지자체는 소각업체가 위탁받은 폐기물 중 분리과정에서 발생된 폐토사 등 매립대상 “불연물에 한해 재위탁” 승인

## 4

# 불법폐기물 배출·처분 방안

### 1.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 승인

⇒ “폐기물중간(소각)처분업체”가 불법폐기물을 처분할 경우 동 사업장 내 “폐기물 임시 보관장” 및 보관기간 연장 승인

【해당법령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31조제2항

- (대상업체) 불법폐기물 처리에 참여하는 폐기물중간(소각)처분업체
  - 다만, 불가피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득한 시설도 가능
- (임시 보관장) 불법폐기물 소각처분을 위해 반입한 경우 “임시 보관장” 및 “보관기간” 연장 승인
- (설치지역) “폐기물중간처분업체” 사업장 내 여유부지
  - ※ 동일인이 해당 사업장에 연접하여 폐기물처리업을 가지고 있는 경우 연접한 폐기물처리업 사업장 내 설치 가능
- (허용 보관량) 폐기물 최대 소각 처분량을 감안하여 보관과정에서 붕괴, 유출 등의 우려가 없는 범위 내
- (승인기간) 폐기물 반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
  - 다만, 불가피한 경우 소각업체 신청에 의해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

#### 임시 보관장 승인 시 주요 검토사항

- ◇ 임시 보관장 주변은 외부인 출입,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(간이 울타리 등)을 설치하여야 됨
- ◇ 임시 보관장소 바닥은 침출수 등으로 주변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고, 천막 등을 설치하여 빗물이 유입되지 않아야 됨
  - 임시 보관장 발생 침출수는 “수질오염방지시설” 등에 유입·처리
- ◇ 임시 보관 중 화재 발생에 대비하여 적절한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하며, 인화성물질 보관·저장장소와 안전거리 확보된 장소
  - ☞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은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0조에 따른 “폐기물 처리업자 등의 방치폐기물 이행보증” 대상에서 제외

## 2. 폐기물중간처분업체 불연물 재위탁 가능

⇒ “폐기물소각처분업체”는 불법폐기물 분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사 등 매립대상 불연물은 매립 업체로 재위탁 가능

【해당법령】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제32조 [별표5] 제3호

- (대상업체) 불법폐기물 처리에 참여하는 폐기물중간(소각)처분업체
- (승인대상)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에서 소각처분을 위해 분리\*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매립대상 불연물에 한함
  - \*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분리한 후 발생하는 매립대상 불연물
- (재위탁 승인량) 소각업체가 허가받은 처분용량의 10% 범위 내
- (승인기간) 폐기물 반입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
  - 다만, 불가피한 경우 소각업체 신청에 의해 6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

### 불연물 재위탁 승인 시 주요 검토사항

- ◇ 불연물은 사업장폐기물배출자(변경)신고를 득한 후 폐기물매립업체로 재위탁하고, 그 양은 올바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됨
  - 동 지침 종료 후에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(변경)신고를 통해 불연물 재위탁 신고 내용 제외하여야 됨
- ◇ 지정폐기물에 오염된 폐기물은 불연물 재위탁 대상에서 제외

## 5 행정사항

- 시·도(시·군·구)는 관내 불법폐기물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처분될 수 있도록 폐기물 임시 보관장 및 불연물 재위탁 승인 협조
  - 폐기물소각처분 업체에서 불법 폐기물 처분을 위한 폐기물 임시 보관장 및 불연물 재위탁 승인 신청시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

-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에서 제3의 장소로 운반, 보관하거나, 장기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“임시 보관장” 승인조건 부여 및 지도·점검 실시
- 폐기물소각처분 업체는 불법폐기물의 안정적 처분을 위한 임시 보관장 설치 등으로 인해 주변환경 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
  - 폐기물 임시 보관장 설치에 따른 유의사항을 참조하여 불법폐기물 보관과정에서 침출수 유·누출 등 환경오염 사고를 미연에 예방
- 폐기물소각업체는 불법폐기물 위(수)탁 계약 물량이 금년 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

## 불법폐기물 임시 보관장 설치(연장) 승인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------	-----	------	----

신청인	① 상호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
	③ 성명(대표자)	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
	⑤ 주소 (전화번호: )	

⑥ 업 종	
⑦ 영업대상 폐기물	
⑧ 영업(소각시설) 소재지	
⑨ 임시 보관장 소재지	

## ⑩ 임시 보관량 설치 승인 신청내용

⑪ 임시 보관장 규모 (톤)		⑫ 불법폐기물 반입 계획량 (톤)	
⑬ 임시 보관장 설치 형태	바닥 재질	울타리 구조	
⑭ 불법 폐기물 임시 보관기간	년 월 일 ~	년 월 일	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

폐기물처리업의      임시 보관장 설치     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: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## 폐기물중간처분업체 불연물 재위탁(연장) 승인 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7일
신청인	① 상호(명칭)	② 사업자등록번호	
	③ 성명(대표자)	④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	
	⑤ 주소 (전화번호: )		
⑥ 업 종			
⑦ 영업대상 폐기물			
⑧ 영업(소각시설) 소재지		소각시설 허가용량	톤/일
⑨ 불법 폐기물 반입현황	반입기간	년 월 일 ~ 년 월 일	
	반입량	톤	
⑩ 불연물 재위탁 예상기간		년 월 일 ~ 년 월 일	
재위탁 폐기물	재위탁 예상량 (톤)	수탁업체	
		업체명	영업대상 폐기물
계			소재지

「폐기물관리법」 제25조제9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

폐기물처리업의 불연물 재위탁 승인을 신청합니다.

년      월      일

신청인: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, 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